

양돈자조금 시대의 의미와 양돈농가의 역할



박종수 교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1. 서론

2004년 4월 1일부터 한국은 물론 아시아국가에서도 최초로 우리의 양돈산업에서 의무자조금이 시작되었다. 양돈농가의 총의에 의해 농가로부터 생산·출하되는 비육돈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이 수납기관을 통해 거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양돈자조금사업은 WTO출범과 더불어 개방경제시대에 국내 양돈산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유통관리가 필연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유통관리를 위한 필수적 수단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활동사업에 양돈농가가 스스로가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산업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이정표를 남기게 되었다.

양돈자조금사업은 결국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통해서 돈육시장의 수급안정을 유지함으로서 안정된 수급으로 인해 나타난 가격의 인센티브는 농가가 향유하자는 목적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제1기의 양돈자조금사업은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지난 4년에 걸쳐서 TV와 라디오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웰빙 3총사 시리즈 광고를 통해 돈육의 저지방부위에 대한 소비촉진을 실시한 사업은 돈육의 전체적인 소비촉진은 물론 돈육의 소비구조를 삼겹살 위주의 소비 패턴에서 저지방 부위의 소비패턴으로 전환시키는 소비 이전 효과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 자조금사업을 통해 생산자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품질의 안전한 돈육 생산유도를 위한 지역별 생산자교육과 세미나, 돼지고기의 우수

성 연구사업 등을 포함한 조사·연구사업, TV와 신문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소비촉진과 연계될 수 있는 내용의 기사가 방영되거나 보도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Publicity와 PR사업, 온라인 홍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wellbeingpork.com)의 개설·운용 등은 소비자 지향적인 돼지고기 유통의 기초를 구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양돈농가가 주도하여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자조금사업에 대해서 매년 90% 이상의 소비자가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을 뿐 아니라, 2004년 자조금사업이 실시된 이후 돼지고기의 공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촉진활동을 통해 돼지고기의 수요를 안정 내지 증가시킴으로서 돼지의 산지가격이 안정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양돈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이 한국자조금연구원의 평가이다. 필자를 비롯한 한국자조금연구원의 연구팀은 그간에 실시된 자조금사업의 계량분석을 통해 자조금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그 결과는 농가와 정부의 대응자금을 합한 자조금 1원당의 수익률이 2004년에는 14.1원, 2005년에는 20.9원 그리고 2006년에는 10.5원인 것으로 나타나있다. 실로 획기적인 성과임이 분명하다.

이 같은 양돈자조금사업은 비단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양돈농가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내 자조금사업을 선도함으로서 사실상 여타 축종의 의무자조금사업을 앞당기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양돈자조금사업이 농가가 사육하여 시장에 출하한 모든 비육돈에 부과되는 의무자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조금의 거출률이 90% 수준에 머무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의 거출실적이 100%를 이루지 못하는 주요 이유는 ① 상당부분 수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비육돈에 대한 산지의 전근대적인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당사자들의 부담책임의 전가, ② 도축장(특히 영세도축장)이 물량확보를 위해 취하고 있는 소극적인 거출행위나 거출의무 태만, ③ 소수 양돈농가의 납부기피, ④ 일부 영세한 도축장의 수납한 자조금의 유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의무자조금제도하에서 무임편승자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양돈자조금사업은 4년간의 태동기를 마치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함, 동법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2006년 12월에 법률의 제명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음)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의에서 금후 4년에 걸친 자조금사업의 지속성 여부와 거출금액 등을 새롭게 결정함으로서 제 2기의 양돈자조금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여기서 제 2기를 맞는 양돈자조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양돈농가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한다.

2. 양돈농가들이 담당해야 할 역할

가. 150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개정된 축산자조금법 제 7조와 동법 시행령 제 2조는 자조금의 거출여부를 결정할 양돈자조금 대의원수를 150명으로 조정하였다. 이에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선출구별 대의원 수를 배분하고 제 2기의 대의원을

선출할 선거일을 오는 10월 17일로 예정하였다. 대의원의 선출은 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구안에 있는 양돈농가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3분의 2이상을 생산하는 양돈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1차적으로 양돈자조금사업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양돈농가의 결집된 힘은 대의원 선거의 투표율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 출마자의 다소를 떠나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나.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찬성을 얻는 일이다

축산자조금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돈자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이 의무자조금의 조성에 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제 2기의 자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출된 대의원들로부터 자조금의 거출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자조금거출에 대한 양돈농가의 찬성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돈자조금제도는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거출금의 한도를 적정히 결정하는 일이다

제 1기의 자조금대의원들은 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의 거출한도를 농가가 출하하는 비육돈 1두당 400원씩으로 의결했었고, 그에 따라 거출된 자조금은 연평균 약 50억원 수준이었으며, 여기에

정부가 지원한 대응자금을 합하면 연간 약 100억 원의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용해온 셈이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한 상업광고 및 홍보시장을 고려할 때, 연간 약 100억원의 자조금을 운용하여 국내산 돼지고기의 효율적인 소비촉진활동을 수행하는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을 실감한 바 있다. 그런데 금후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식품을 비롯한 축산물간의 소비촉진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그에 따른 자금소요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의 거출한도를 돼지거래가격의 100분의 5이내에서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 2기에 양 축가로부터 거출하는 자조금은 비육돈생산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상향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자조금의 징수율을 올리는 데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대의원회의에서 의무자조금의 거출에 대한 찬성을 얻고 거출한도가 결정되면 수납기관인 돼지의 도축업자나 돈육의 가공업자에게 자조금의 징수를 위탁하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수납자인 도축 및 가공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일이다. 제 1기의 양돈자조금 시대에 자조금의 거출률이 100% 이루어지지 못한 여러 요인 가운데, 영세 도축장의 도산 등으로 인한 도축업자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조금의 징수업무가 비록 도축 업무에 추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양돈산업을 함께 발전시켜나간다는 차원에서 도축 및 가공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한다. 원활한 소비촉진 활동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촉진된다면, 양돈농가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돈농가는 물론 돼지의 도축업

자와 가공업자 등 양돈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돈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제도에 도축업자나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 것은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한 당연한 과제이지만, 도축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개별 양돈농가의 자발적인 납부와 더불어 양돈지도자들의 자조금 미납도축장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설득작업도 필요하다.

마. 양돈자조금사업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거나 자조금사업을 통해서 양돈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마련에 지나치게 집착해서도 아니 된다

고도의 개방경제시대에 양돈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유통관리가 불가피하고, 이 합리적인 유통

관리를 위한 주요한 수단인 소비촉진활동사업에 양돈농가가 스스로 참여한다는 데에 양돈자조금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이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납부한 자조금은 전문가집단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맡기되, 대의원총회나 성과의 평가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계획과 결과를 철저히 검증하면 된다.

WTO의 출범, 한·미 FTA의 타결, 한·EU의 FTA협상 등을 포함한 개방의 파고는 우리의 양돈산업을 거센 위기에 몰아붙이고 있다. 이렇듯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는 개방의 파고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적인 안전한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고품질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잘 알려서, 그 어느 식품보다도 국내산 돼지고기가 소비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선택되도록 소비자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 어떻든 제 2기의 양돈자조금시대가 순조롭게 출범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양돈**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 안내

1. 선출구명 및 선출대의원수 : 전국 92개 선출구(선출대의원수 : 150명)
2. 선거인 :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3. 선거일 : 2007년 10월 17일(수)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양돈농가의 과반수 이상 또는 선출구안에서 돼지마리수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는 양돈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8일까지 선거일을 연장함)
4.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 투표장소 :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한 장소
6. 피선거권자 : 선거공고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7. 선거인명부열람 : 2007년 9월 17일부터 2007년 10월 16일까지(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양돈농가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8. 기타 : 상세한 사항은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해당 시군 지역축협 또는 양돈협회 지부)에 문의바람